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. 9. 20 선고 2023가단3142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헌

담당변호사 장성환

변 론 종 결 2023. 8. 23.

판 결 선 고 2023. 9. 20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3. 1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20. 3. 18. 접수 제77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

- 1) D 주식회사(이하 'D'라 한다)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42710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 위 법원은 2013. 7. 25. 'C은 D에 8,791,871원 및 그중 700만 원에 대하여 2000. 12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(이하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채권을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.
- 2) D1)는 2019. 8. 8.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21. 7. 5.경 C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.
- 3)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무렵인 2023. 2. 9.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차전133847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한 C의 이의로 소송으로 이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413290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3. 7. 19.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C의 피고에 대한 증여 등

- 1) C은 2019. 10. 14.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2 지분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5. 6. 10.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였다.
 - 2) 그 후 C은 2020. 3. 18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,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20. 3. 18. 접수 제7777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 - 3)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도 없었다.
- 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부

정보시스템운영과(등기정보조회)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, 이 법원의 영등포세무서, 영등포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였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(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),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, 즉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(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).

2)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C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다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양시호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1. 보령시 H 대 1105㎡
2. 보령시 I 전 1164㎡
3. 보령시 J 임야 2517㎡
4. 보령시 K 답 1978.2㎡
5. 보령시 L 전 1375㎡
6. 보령시 M 전 26㎡. 끝.

1) D는 그 상호가 2015. 4. 1. E 주식회사로, 2017. 12. 1. F 주식회사로, 2020. 9. 14. G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.

2) 피고는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한 채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지 않다.